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정책의 입안·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중 “자문”을 “자문·협의”로 한다.

안 제3조중 “50명”을 “70명”으로 한다.

안 제6조 제1항중

제2호 “복지분과위원회”를 “복지·여성분과위원회”로 하고,

제3호 “문화관광분과위원회”를 “문화관광·환경분과위원회”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과위원회내에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주요 시책의 입안과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도정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정책의 입안·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도정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p>	<p>제2조(기능) 자문·협의를 응한다.</p>
<p>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3조(구성 및 임기) ① 70명</p>
<p>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혁신분과위원회 2. 복지분과위원회 3. 문화관광분과위원회 4. 산업정책분과위원회 5. 지역발전분과위원회 <p>② (생략) ③ (생략) < 신설 ></p>	<p>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혁신분과위원회 2. 복지·여성분과위원회 3. 문화관광·환경분과위원회 4. 산업정책분과위원회 5. 지역발전분과위원회 <p>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④ 분과위원회내에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정책의 입안·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도정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협의를 응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행정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정 발전을 위한 전국적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2. 분과위원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과위원회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자문단은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실·국·단·본부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자문단과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1. 공공혁신분과위원회
2. 복지·여성분과위원회
3. 문화관광·환경분과위원회
4. 산업정책분과위원회
5. 지역발전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내에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고 분과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둔다.

② 자문단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도지사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자료 협조 등) ① 도지사는 자문단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유효기한)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